

제3장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한국에서도 환상의 짹꿍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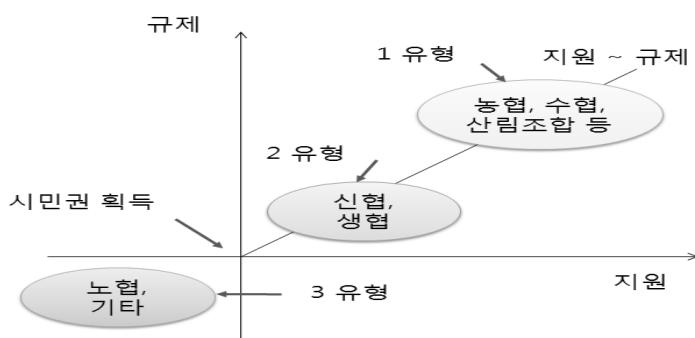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1. 협동조합은 낮은 브랜드인가?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0만을 이미 넘어섰지만 협동조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아는 사람들의 인식도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정도이다. 하지만 농협이나 수협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유기농이나 친환경 먹거리를 구입하는 매장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도는 매우 낮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협동조합들은 제각기 독립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1957),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197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0)을 따르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이 상이한 지원과 규제를 받고 있고, 자율적이고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김기태는 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규제 현황을 아래의 그림처럼 정리한다.



[그림 1] 지원-규제의 관계로 본 협동조합 유형¹⁵⁾

그런데 협동조합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달리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금융기관 형식을 취한 신협을 제외하면 농협의 조합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농협의 조합원수가 2백 45만명, 수협이

15) 김기태. 2011. “지역사회 연대전략”. 의료생협 기획. 정책토론회 자료집.

16만 7천명, 중소기업협동조합이 62만 4천명, 신용협동조합이 5백 51만명, 소비자생협이 41만 4천명이다(이런 수를 바탕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는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아이쿱생협 등이 가입되어 있다). 조완형은 국내 소비자생협의 조합원 수와 공급액을 아래 표와 같이 추정한다.¹⁶⁾

		2009	2010	증가율
공 급 액	한살림연합	151,148	186,686	17.3
	아이쿱생협연합회	205,300	263,270	28.2
	두레생협연합회	56,206	64,886	15.4
	민우회생협	15,367	16,962	10.4
	기타	28,360	33,548	18.3
	합계	464,381	565,352	21.7
조 합 원 수	한살림연합	207,053	247,072	19.3
	아이쿱생협연합회	78,593	118,824	51.2
	두레생협연합회	67,558	83,609	23.8
	민우회생협	19,579	22,972	17.3
	기타	43,150	49,620	15.0
	합계	415,933	522,097	25.5

그리고 소비자생협 외에 한국의료생협연대 소속 의료생협(2008년 12월 기준)에 소속된 12개 의료생협의 조합원 세대 수를 합치면 12,540세대이다.¹⁷⁾

	안성	인천	안산	원주
설립동기	농촌의료봉사	산재 및 직업 병 해결	지역환경 보호운동	생협간의 협동
최초 주체	농민회와 기독학생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시민모임, 동의학민방연구회	소비자생협/신협
설립연도	1994	1996	2000	2002
조합원수	3,031세대	1,667세대	1,766세대	1,417세대
	대전	서울	전주	함께걸음
설립동기	지역화폐운동	신협운동의 확장	보건의료운동과 공동체운동	장애우 평등세상
최초 주체	한밭레츠, 대전 인의협	영등포산업 선교회	청년한의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설립연도	2002	2002	2004	2005
조합원수	1,090세대	1,066세대	365세대	459세대

16) 조완형. 2011.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경과 및 현황과 방향”. 제 1회 대학생협 아카데미 자료집.

17) 임종한. 2009. “한국사회 의료생협의 역할과 가치”. 의료생협 1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청주	용인	성남	수원
설립동기	복지네트워크	장애인아동부모 모임	장애인무료진료	복지네트워크
최초 주체	지역주민	장애인아동미래 연구회	지역시민 사회단체	지역시민단체네트워크
설립연도	2007	2007	2008	2009
조합원수	332세대	445세대	602세대	300세대

숫자로 그 가능성을 점칠 수는 없지만 조합원의 수로 판단한다면,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은 낡은 브랜드가 아니라 뜨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자생협의 조합원수와 공급액 증가속도는 다른 산업보다 월등하게 빠르다. 물론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수준에서 성장속도가 빠른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한다. 허나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협의 성장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유사소비자생협'과 '유사의료생협'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더욱 그렇다).

2. 협동조합이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나?

협동조합의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를 토대로 삼는 협동조합이 세계화라는 현실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보편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보다 중요해질 과제, 인류 생존조건의 근본적인 변화와 결부된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인구의 급속한 증가, 환경에 대한 압력의 증대, 극히 일부에게만 집중된 경제력, 세계도처에서 커뮤니티를 고민케 하는 다양한 위기, 지구 곳곳에서 현저해지는 빈곤의 심각화, 점차 빈발하는 민족분쟁 문제가 포함됩니다. 협동조합이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해결을 위해 크게 공헌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고품질의 식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종종 해온 것처럼 환경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력을 보다 널리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역사적 역할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각각이 위치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자조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정치적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¹⁸⁾

18) 쿠리모토 아키라(栗本 昭) 지음. 주영덕·김형미 옮김. 2009. 『21세기의 새로운 협동조합원칙: 일본과 세계 생협 10년 동안의 실천』. 생협전국연합회, 22~23쪽.

물론 세계화의 조건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식품산업을 지배하는 초국적기업과 경쟁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초국적 금융자본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고 소비자생협도 대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변화된 조건에서 미국의 대규모 농협이 파산하거나 투자자소유기업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신협이나 소비자생협이 파산하기도 한다. 허나 이런 상황에 맞춰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등장하는 신세대협동조합(제한된 지역에서 동질성이 강한 농민들이 고부가가치사업을 추구하는 소규모 농협)이나 금융위기에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들(조합원수와 시장점유율이 더 늘어남), 유기농축산물과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등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비자생협, 사회서비스 전달과 취약계층 고용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¹⁹⁾

협동조합운동이 세계화의 흐름에도 생존하고 자기 역할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위치한 경제의 영역이 반드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영역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령 헤이즐 헨더슨은 경제지표로 측정되는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경제영역이 그동안 인류사회를 지탱해 왔다고 주장한다.²⁰⁾ 그리고 그런 경제영역이 있었기에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그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헨더슨은 이런 경제영역이 가진 잠재력이 윤리적 시장을 형성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리라고 예상한다. 일본의 후쿠시 마사히로(福士正博)도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가 다른 원리에 기초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서 “가족, 이웃, 커뮤니티를 무대로 한 평등, 호혜원칙, 상호관계, 배려라는 원리”를 따르는 비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타임뱅크(일종의 지역화폐)를 주장한다.²¹⁾

따라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이 세계화의 조건에 무기력하다는 것은 일정정도 왜곡된 상식이고 협동조합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협동조합은 가격과 품질, 환경, 윤리, 공정성의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

19) 장종의. 2011. “세계협동조합의 최근 현황과 주요 특징”. 2011 협동조합아카데미 자료집.

20)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금융과 비즈니스 뉴스나,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이 생산과 서비스, 투자, 거래의 범위를 절반 정도만 반영하는 경제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사회의 절반만이 화폐로 계산되는 것이다. 똑같이 중요한 비화폐 부문은 사실상 사회생활의 중심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내총생산(GDP) 혹은 다른 거시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화폐로 계산되는 공식적인 영역보다 더 크다. 이러한 비화폐적 기여는 이른바 ‘사랑의 경제학’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경쟁적이고 돈에 바탕을 둔 영역을 떠받치고 있는 가족과 커뮤니티, 협력과 자선 활동 등을 말한다.”(헤이즐 헨더슨. 정현상 옮김. 2008. 『그린 이코노미』. 이후, 25쪽)

21) “영국의 지역통화운동은 1990년대의 ‘지역교환교역 시스템(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LETS)’으로부터 21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는 타임뱅크(Time Bank)로,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발전의 특징은 타임뱅크가 ①LETS형의 지역통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②세계로 확산되는 지역통화운동의 경험에서 배워 새로운 이념에 근거한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 타임뱅크는 LETS를 더욱 진화시켜, 커뮤니티에서 로열티 포인트(loyalty point)로써 기능시키고자 하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이념이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그녀들)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throw-away people)’으로 방치되던가, 단순히 행정 서비스의 수급자로만 인식되었던 것에 대해,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를 발휘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서비스 제공자)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주체가 지역의 농동적인 관계가(스테이크 훌더)가 된다, 라는 생각을 가리킨다. 이 새로운 이념은 미국의 지역통화 타임달러(timedollar)를 보급시킨 법률가 에드가 칸(Edgar S. Cahn)에 의해 협동생산으로 불리게 되었다.”(후쿠시 마사히로. 2009. “협동생산(co-production): 타임뱅크의 기본개념과 실태”. 오사와 마리 편저. 아이쿱생활협동조합연구소 옮김. 『생활속의 협동: 배제를 뛰어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푸른나무, 125~127쪽).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조직이고 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아마르티아 센이 '자유로서의 발전'이라 이름붙인바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상황에 외려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세계화의 조건이 협동조합의 변화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을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과제는 여전히 남지만 말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이 가진 의미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3. 협동조합 7원칙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2) 민주적 관리의 원칙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의 원칙
- 4) 자율과 독립의 원칙
- 5)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의 원칙
- 6)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원칙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 각각의 원칙들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가족과 사회집단에의 참여가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 성과 재산, 인종,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한다.

물론 이를 위해 협동조합 내에 차별을 낳는 문턱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고, 차별 없는 멤버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가령 '중산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된 소비자생협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족구성의 변화, 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유연해야 한다(현재의 소비자생협이나 의료생협은 정상가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민주적 관리의 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의 원칙

1주 1표를 따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나 참여방식이 배제된 한국사회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과 일상활동,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관리, 일터의 민주주의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을 자각하고, 사업의 확장보다 조합원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기에, 주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도 조합의 의무이다.

○ 자율과 독립의 원칙

대형마트, SSM 등 문어발식 확장이 기본인 재벌중심의 한국경제에서, 농협, 수협 등 정부가 민간단체를 길들이고 통제하려드는 한국사회에서 자율과 독립의 원칙이 갖는 의미는 크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관리하는 조직이고, 앞서의 자발성, 평등, 민주주의, 참여가 조직 내의 핵심가치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조합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고, 사업과 운동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

○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의 원칙

조직 내의 정보가 독점되고 통제되는 한국사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형 인간’, ‘스펙’이 강요되는 한국사회에서 이 원칙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이는 시민으로서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이를 공육(共育: 생활자·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상호교육과 상호성장)이라 부른다.

○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원칙

적대적인 경쟁, 인수합병(M&A)이 원칙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 복불복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에서 이 원칙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 원리상 협동조합은 공생(共生)을 지향해야 하고, 협동조합간의 경쟁을 막거나 최소한 적대적인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회적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선이나 투자가 원칙인 근대사회에서, 중앙집권형 국가인 한국사회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붕괴되어 가는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협동조합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얘기되는 것은 사회가 국가에 미친 영향이다. 즉 사회가 독재에서 민주화로 국가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얘기이다. 동학혁명, 3·1운동, 식민지 시기의 각종 조합운동과 저항운동, 해방 직후의 인민위원회 운동, 4·19, 5·18 등의 사건들은 한국의 사회가 가진 저항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이런 다양한 흐름들이 억압적인 국가권력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반대로 국가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서구 제국의 역사와 달리, 한국처럼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성격을 강력하게 규정했다. 사회가 가진 저항의 잠재력을 봉쇄하기 위해 일제 식민지 권력과 해방 이후의 독재권력들은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를 만들었고 경찰과 군대와 같은 물리력으로 시민을 억압했다(우리에게는 공권력이 없고,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사권력’만 있다). 단결을 막기 위해 지방별로, 지역별로 시민을 가르고 이해관계를 충돌시키는 분할통치전략(divide and rule)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면, 리 단위의 말단 행정구역까지 지주회나 진흥회, 모범부락,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관변조직을 만들고 기득권층을 포섭했으며 호주제도와 같은 관리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교육과정과 사회진화론적인 적자생존을 익히고 그에 따른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교육체계는 시민을 순종적인 신민(臣民)으로 만들어 왔다.

따라서 이런 중앙집권형 권력구조, 분합통치전략, 관변조직, 교육체계가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소위 중앙의 사회운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언제나 중앙의 의제가 지방의 의제를 압도하는 현상은 이런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지역사회가 보수화되고 이해관계에 민감한 것은 일제시대부터 체계적으로 조직된 동원체계 탓이 크다. 또한 백 년 가까이 변하지 않은 내용만 변했을 뿐 형식이 그대로인 교육체계는 뼈 속 깊이 시민들에게 수동성을 심어놓고 연고주의와 학벌사회를 강화시켰다.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이런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더구나 국가의 민주화와 더불어 단체의 설립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적기업 지원법 등을 비롯한 국가의 여러 전략이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가 국가의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자기 내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권력논리에 일정 부분 포섭되고 말았다.

또한 국가와 시장의 관계, 즉 국가와 대자본의 결탁관계,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 수도권으로 초집중화된 국토의 불균등발전과 독점구조는 오랜 세월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국가가 시장을 관리하는 ‘관치경제’가 자리를 잡았고 자급경제(subsistence economy)를 폭력적으로 파괴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농민공동체에 화폐경제와 배타적인 사적소유권을 강요했다. 1910~1918년의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 1930년대의 농촌진흥운동 등은 한국의 농촌공동체를 거의 붕괴시켰다. 일제는 농촌의 도덕경제(moral economy)를 해체시키고 소농이나 소작인들을 농업노동자, 도시의 빈민으로 만들었다. 국가가 대자본을 위해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 저곡가 정책을 농민에게 강요하며 시장에 개입했다.

그리고 국가는 금융조합이나 수리조합, 농협, 수협 등 자생적인 협동조합운동을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어 농·어민을 착취해 왔다. 국가가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의 시장은 민주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와 결탁해 왔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재벌이 권력층에 비자금을 제공하고 권력층이 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부패한 구조는 아직도 존재하다. 대자본과 초국적자본이 한국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한국사

회에서 국가와 시장은 대립하지 않고 끈끈한 공생관계를 맺어왔고 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이런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시장과 사회의 관계는 어떨까? 사회에서는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독점과 재벌중심의 시장구조를 제한하고 바꾸려고 노력해 왔다. 협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농민들의 자조노력,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시장의 규칙을 민주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한국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몇몇 지역이나 기업에서 제한적으로만 성공을 거뒀을 뿐 경제구조와 도시화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민주화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사회가 국가를 등에 업은 시장을 견제하지 못했다면, 시장은 공유지들을 사유화하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을 화폐관계로 대체하면서 시민을 소비자로 전락시켰다. 손낙구의 『부동산계급사회』(후마니타스, 2008년)에서 드러나듯이, 땅은 철저히 사유화되었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부는 고스란히 기득권층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시장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나 사회복지의 부담을 가정으로 떠넘겼고, 한국의 시장은 ‘가족임금’을 내세워 남성을 가족 부양자로 만들었고 사회의 가부장주의를 더욱더 강화시켰다. IMF를 거치며 시장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원리를 더욱더 집요하게 사회에 강요하고 있다. 이제 소비는 필요가 아니라 서로의 수준을 맞추고 위신을 세우기 위해 낭비해야 하는 강박이 되고 있다. 김동춘 교수의 ‘기업사회’라는 지적처럼 이제 한국 사회는 사회가 기업의 모델과 논리에 따라 조직되고 있고 국가가 이런 변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한 여러 기업의 경영전략들이 사회를 관리하는 새로운 규율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따져보면 국가가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했다는, 또는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한국의 사회가 일정 정도 국가나 시장을 변화시킨 점은 분명하지만 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회도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한국사회는 생태위기, 에너지 위기, 사회적 양극화와 심각한 불평등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들에 대해 국가, 시장, 사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현재 한국의 국가나 시장은 이런 위기의 원인이지 위기를 해결해 나갈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단지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권을 모두 통틀어 보더라도 국가는 이런 위기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지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주체일 수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며 재벌의 배만 살찌우고 있는 시장 역시 이런 위기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잘못된 구조는 서로 통합되며 힘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러니 신자유주의의 맨얼굴은 국가의 무능력과 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국가와 시장의 통합이다.

캐나다의 언론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쇼크 독트린』(살림Biz, 2008년)에서 ‘재난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라는 표현을 쓰며 자본과 권력이 통합되는 현상을 지적

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시장이 통합되며 더욱더 엄청난 힘을 만들어 그 힘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시켜주고 있다. 세계의 공간은 점점 안전한 공간과 불안한 공간으로 나뉘고 있고, 안전한 공간은 높은 장벽과 사설경비원, 전자감시 장치들로 둘러싸여 있다. 안전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의 공간은 불안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결탁한 국가와 시장은 재난이라는 극단적인 삶의 위기를 이윤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 이제 정치와 경제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 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보수, 시장은 통제, 국가는 진보, 시장은 보수,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장을 통합해서 바라보며 사회의 대안적인 전망, 대항적인 힘을 기르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삶은 공동체라는 생활양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었고, 정치와 경제는 독자적인 체제가 아니라 그런 삶을 반영하는 구조였다. 근대국가나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협동조합운동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 왔고 인류 역사를 발전시켰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은 단순히 국가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힘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힘으로 국가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4.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경제의 전망

이런 과제를 한국의 협동조합이 훌륭히 수행하고 있을까?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내부는 그리 단단하지 않다. 김홍주는 활성화된 협동조합이라 평가받는 충남 홍성의 풀무생협 생산자 회원 285농가를 설문조사하고 난 뒤 생산자들의 가격만족도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이념보다 이윤동기에 따라 참여하는 생산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이념이나 소신보다 생존전략의 한 방식으로 친환경농업을 선택한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정부는 실적 위주의 친환경농업정책을 펴나가고, 풀무생협은 정책적 지원에 기대어 조직적 외형 확장에만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생산자의 관리나 규율은 소홀하게 되고, 소비자와의 관계적 신뢰도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²²⁾ 그리고 땅값 상승이 유기농 농민을 압박하고 토박이농부들이 고령화되는 현상 역시 농촌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순수한 구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민주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모든 순수한 판매 협동조합은 과정적 성격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라는 베른슈타인의 오래된 지적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²³⁾

협동조합의 다른 축인 소비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생활협동조합이 대중화될수록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물든 대중의 욕망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이런 현상은 생협이 ‘웰빙’바람을 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측면은 조합원을 자기 삶의 주체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로서의 의식만 강화시킨다. “지역 생협의 홈페이지에는 들어가지 않고 물품 주문 사이트에만 들어오는 조합원들은 주인의식을 갖기가 어렵다. 그들은 생협

22) 김홍주. 2008. “풀무생협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 18권, 26쪽.

23)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지음. 강신준 옮김. 1999.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 한길사, 213쪽.

의 운영진과 사무국을 서비스의 공급자인 듯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말하자면 매달 일정한 조합비를 냈으나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클라이언트 의식이다.”²⁴⁾ 그러다보니 협동조합 내부에서조차도 협동조합운동의 과제가 토론되거나 발전되지 않는다.

게다가 협동조합운동의 내부만이 아니라 그 운동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시민사회라는 외부도 이런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창작과비평사, 2008년)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사람들의 의식은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의 의식은 경쟁과 효율,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되어 경쟁력 키우기를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분명히 이런 여러 문제점들은 협동조합운동의 성공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공동의 사회적 지향을 마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사실 협동조합의 성공 여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른 ‘사회적 시장’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협동조합이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성장한다면, 그 운동은 결국 기반을 스스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레츠(LETS), 마을만들기운동 등을 통해, 그리고 친환경급식이나 로컬푸드만이 아니라 주거, 보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단체들이 이런 관계망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만일 이런 관계망의 확대가 소유권을 약화시키고 공동소유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 협동조합운동 새로운 노동과 거래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내부도 이런 원칙에 맞춰 자신의 활동을 점검해야 한다. 생협의 관계망이 정말 생활재에 얼굴을 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얼굴을 익히고 맞대며 서로의 삶을 걱정하게 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기르게끔 지원하고 있는가? 작업장과 매장 내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며 자기 활동을 성찰할 때 협동조합운동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힘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운동은 자신의 활동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가, 새로운 사회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새로운 안을 구성하고 있는가라는 물음도 던져야 한다. 빈민, 실업자, 청년, 이주노동자같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총체적인 삶의 위기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약자들이 협동과 연대의 과정에서 자기 삶의 전망을 찾을 수 있다면 협동조합운동은 이 사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원주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17개 회원단체와 원주지역 5개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원주의

24) 김찬호, 2008. “iCOOP생협 10년의 사회문화적 의미”, iCOOP생협연대 지음. 『협동, 생활의 윤리: iCOOP생협 10년사』, 도서출판 푸른나무, 146쪽.

사회적경제 블록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 농업을 비롯해 유통, 신용, 소비자, 사회서비스, 교육, 문화, 환경·생태 등의 영역으로 블록을 확장시킬 계획이고, 상호부조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안, 사회경제 장터(쇼핑몰) 구축, 협동카드 발행, 협동기금 출연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협동기금을 마련하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매체를 안정적으로 발행하며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장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의료생협의 경우도 조합원의 건강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장하고, 건강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가장 오래되고 많은 조합원이 가입한 안성의료생협을 보면 그 노력이 잘 드러난다.

안성의료생협의 사회적 회계 보고서

목적1. 믿을 수 있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 적정진료
- 환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진료 및 교육
-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 소독 및 위생관리 철저
- 의료기관 직무교육

목적2.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의료비 감면
- 취약계층 의료 지원 서비스
- 거동 불편자를 위한 서비스
- 취약계층 집 고치기

목적3. 지역사회 주민 자치능력 향상

- 생협인 교육활동
- 건강모임
- 조합운영 참여활동
- 조합원 자치활동
- 자원봉사 활성화 활동
- 자치행정 참여

결국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공급액의 확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다(아니, 원래의 자기 정체성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협동조합 스스로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변화를 유도하는 시도도 필요하다.²⁵⁾ 가령 원주처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나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밀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도 참조할 만하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혜택 또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이와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외부 비조합원도 사업과 수혜의 대상이 되는 개방성과 사회성을 갖는다).

(나) 조합원은 노동자·이용자·자원봉사자·재정후원자·법인(지방정부를 포함)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전체 조합원 수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다원적인 조합원 구조를 갖되 노동자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 조합원들의 비율을 제한하였다).

(다) 조합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은 전체 이익금의 8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되고 1구좌의 배당률은 이탈리아 우체국 발행 채권 수익률인 2퍼센트를 넘을 수 없으며 청산할 때 자산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조합원들의 배타적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의 사회적 성격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 사회적협동조합은 활동유형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A유형 협동조합과 사회적 불이익자들을 고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B유형 협동조합으로 구분하며, B유형에는 사회적 불이익자들의 전체 고용이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마) 정부 및 공공부문은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자선조직과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할 수 있으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퍼센트까지 감면한다. 또한 공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20퍼센트까지 B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할당할 수 있으며, 이 조합들은 사회보장 부담세를 면제받는다.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제 381호²⁶⁾

25) “생명력있는 협동조합이란 봉어빵 찍어내듯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령에 의해 금방 설립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혼자 힘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 그 토양이 그것이 자라나기 위해 맞게 잘 다듬어진 곳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베른슈타인의 지적을 따를다면 토양을 바꾸는 작업이다(베른슈타인, 앞의 책, 217쪽).

26) 김태열 외. 2010. 『협동조합도시 블로냐를 가다』. 그물코, 19쪽.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남미의 베네주엘라는 시민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협동조합을 활용하고 있다.²⁷⁾ 볼리바리안 헌법 제 61조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공적인 사안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공적인 협상의 구성과 집행, 통제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완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리더십을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118조와 308조는 국가가 협동조합을 “양성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차베스가 2001년에 보완했던 이 헌법적인 권리인 협동조합 형성과정을 활성화시키자고 규정했다.

협동조합특별법은 협동조합을 사회적 포용정책의 근본적인 도구로 변화시켰다. 정부는 정부계약사업자로 협동조합을 선정했고 저리나 무이자로 융자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협동조합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협동조합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2001년에 통과된 토지법은 협동조합이 사용되지 않는 땅을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농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협동조합 공동체들을 만들었다. 2004년에 단체들의 수는 1998년 21만 5천개에서 94만 5,517개로 증가했고, 이를 단체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11만 6천 가구에게 분배된 5백만 에이크 이상의 땅을 대표했다.

국가협동조합본부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감독하고 있다. 국가협동조합본부에 따르면 베네주엘라에서 협동조합의 수는 1999년 910개에서 2008년 초반 22만 8,004개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국가협동조합본부는 서비스(61.29%)와 생산분야(27%)의 협동조합들이 베네주엘라 고용의 약 18%를 책임지고 GDP의 약 14%를 차지한다고 얘기한다.²⁸⁾

2012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협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해 본다.

27)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서 협동조합을 정치적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처음으로 정부계약 대신에, 서로 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2006년 무렵, 전국엔 10만 개의 협동체가 있고 70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그곳에 몸담고 있다. 지역사회에 운영권을 맡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정비, 의료 클리닉 같은 기반시설들이 대부분이다. 정부 아웃소싱의 역발상이라 하겠다. 국가의 일부를 대기업에 입찰로 넘겨 민주적 통제권을 상실하는 방식이 아니다. 정반대로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관리할 권한을 넘겨준 것이다.”(나오미 클라인 지음. 김소희 옮김. 2008. 『쇼크 독트린』. 살림Biz, 578쪽)

28) 에이프릴 하워드. 하승우 옮김. “베네수엘라, 내부의 힘으로 협동문화 만들기”. 《녹색평론》2009년 3·4월호.